
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소 인증(연장) 신청서

※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인증: 40일 연장: 60일
신청인	영업신고(등록) 번호		영업신고(등록) 연월일	
	영업소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본사		
		공장(사업장) ※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, 신고번호를 기재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)	
	HACCP팀장		생년월일	
신청 내용	HACCP적용 식품명(유형)		인증번호	
	HACCP적용 품목별(유형) 1년간 생산실적			
	품목명	생산실적(단위: 천원)	품목명	생산실적(단위: 천원)
	품목명	생산실적(단위: 천원)	품목명	생산실적(단위: 천원)

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3항·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·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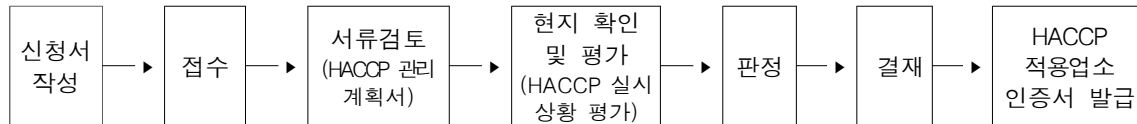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(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, 모니터링 방법,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)	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장이 정하는 금액

처리절차



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
(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)